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21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1166호, 2005.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 완구 안전검사기준 적용범위에 어린이가 피부에 바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식품 또는 화장품을 완구와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각각 표시토록 하기 위함
-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에 대해서는 질식 방지를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사용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인체에 무해한 향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 내용

※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 완구 안전검사기준 신·구대비표 (안전검사 부속서 20)

현행	개정	비고
<p>서문 완구란 사용하는 완구로 본다. 이 기준에서 의미한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엔진 내지 · 실제 무기 복제품 <p><신설></p> <p>6. 표시</p> <p>6.1 일반사항</p> <p>6.1.1 ~ 6.1.3 (생략)</p> <p><신설></p>	<p>서문 (현행과 같음)</p> <p>·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을 포함한다)</p> <p>6. 표시</p> <p>6.1 일반사항</p> <p>6.1.1 ~ 6.1.3 (현행과 같음)</p> <p>6.1.4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p>	



□ 크레용·크레파스 안전검사기준 신·구대비표 (안전검사 부속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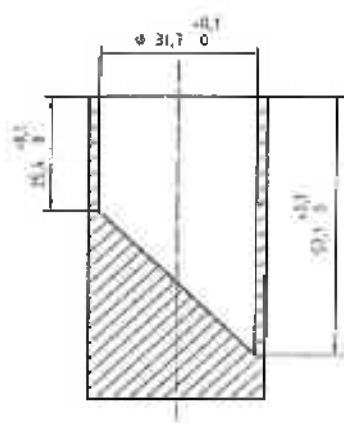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1. 적용범위 (생략)	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2. 관련규격 (생략)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 - 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M 0001 화학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방법 통칙 KS M 7602 거름종이(화학분석용) KS M ISO 6353-2 화학분석용 시약 제2부 : 규격 제1집 < 신설 > < 신설 > 완구 안전검사기준 - 제2부 : 기계적, 물리적 특성 완구 안전검사기준 - 제4부 : 유해원소의 응출 < 신설 > < 신설 > < 신설 > ASTM F 963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on Toy Safety < 신설 > < 신설 >	2. 관련규격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 - 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M 0001 화학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방법 통칙 KS M 7602 거름종이(화학분석용) KS M ISO 6353-2 화학분석용 시약 제2부 : 규격 제1집 확용품 안전검정기준 제15부 14세까지의 어린이용 필기·마킹용구의 캡- 안전요건 KS ISO 13301 관능검사 -방법론 - 삼자택일(3-AFC)과정을 통한 냄새, 맛 그리고 향미 검출을 위한 지침서 완구 안전검사기준 - 제2부 : 기계적, 물리적 특성 완구 안전검사기준 - 제4부 : 유해원소의 응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첨가물 공전 OECD Guideline TG 42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 ASTM F 963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on Toy Safety ANSI Z356.1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Art and Craft Materials - Crayons ASTM D 4236 Standard Practice for Labeling Art Materials for Chronic Health Hazards	신규 적용되는 규격·기준 표시
3. 종류 (생략)	4. 색명 (생략)	
3. 종류 (현행과 같음)	4. 색명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5. 안전요구사항 (생략) 5.1 유해물질 (생략)	5. 안전요구사항 (현행과 같음) 5.1 유해물질 (현행과 같음)	
5.2 도안 및 문장 (생략)	5.2 도안 및 문장 (현행과 같음)	
5.3 향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3 향료 향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24. 합성착향료에 수재된 품목 및 Codex, FEMA (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 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가능 향료 범위 설정
< 신설 >	5.4 급성 및 유전독성(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에 한한다.) 사용 원료(약산, 안료, 향료 등)의 급성독성값(LD50)은 6.3의 경구독성시험에서 2,000 mg/kg 이상이어야 하고, 유전독성은 6.4의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이면 음성으로 판정하나 그중 1항목이라도 양성이면 소핵실험을 통하여 최종 판정한다. 다만, 각 사용원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독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유해성 확인 요건 신설
< 신설 >	5.5 크레용·크레파스 및 그 개별 포장물의 크기(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에 한한다.) 크레용·크레파스의 내용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6.5(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안 된다.	질식 제한 요건 신설
6. 시험방법 유해물질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6.1 ~ 6.4 (생략)	6. 시험방법 6.1 유해물질의 시험 6.1.1 ~ 6.1.4 (생략)	
< 신설 >	6.2 향료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는 사용한 향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5.3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향료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ISO 13301 을 따른다.	향료 확인방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6.3 경구독성시험(Acute toxicity test)</p> <p>6.3.1 실험동물</p> <p>① 종(계통) : SPF SD계 랫드(SD rat)</p> <p>② 성별 및 입수시 주령 : 암·수컷 4주령</p> <p>③ 검역 및 순화기간 : 실험실에 순화시키는 기간을 약 1주일 두며, 그 기간 중 일반 증상을 관찰하여 건강한 동물만을 시험에 사용한다.</p> <p>④ 경구 투여 시 체중범위 및 주령 : 수컷 110±5g, 암컷 95±5g의 5주령</p> <p>⑤ 군 분리 및 동물식별 : 실험에 사용된 건강한 동물의 체중을 측정하여 각 군의 평균 체중이 거의 일치하도록 군 분리를 하고, 개체식별은 피모색소(피크린산) 마킹법과 사육상자별 TAG 표시법을 이용한다.</p> <p>6.3.2 시험방법</p> <p>① OECD Guideline TG-420에 따른다.</p> <p>② 투여방법</p> <p>가) 투여 경로 : 경구 투여(Oral)</p> <p>나) 투여 횟수 및 투여 기간 : 1회 투여</p> <p>다) 투여 부위 및 투여법 : 크레파스를 잘게 분쇄하여 분말사료에 혼합하여 24시간 공급한다.</p> <p>라) 투여량 : 약 200g 랫드의 일일 평균사료 섭취량이 약 20g이므로 분말사료에 혼합된 시험물질의 최고농도를 5%설정하여 투여한 후 사망동물이 관찰되면 예비시험을 통한 4 - 5 단계의 적절한 용량을 설정하여 투여한다.</p> <p>③ 임상증상 관찰 : 투여 당일은 12시간에서 매시간 일반상태를 관찰하고, 투여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매일 1회씩 일반상태의 변화, 중독증상, 운동성, 외관, 자율신경 및 사망동물의 유무를 주의깊게 관찰한다.(참고사항)</p> <p>④ 체중 측정 :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직 전과 투여 7일후 및 부검 직전인 14일에 3회 체중을 측정한다.</p> <p>6.4 유전독성시험</p> <p>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의 유전독성 시험방법을 따른다.</p>	<p>독성시험방법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6.5 작은 부품 시험</p> <p>① 크레용 또는 크레파스 및 분리가능한 개별 포장물을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넣은 상태에서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p> <p>② 실린더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별 포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용품 안전검정기준 제15부 14 세이하 어린이용 필기·마킹용구의 캡의 안전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치수 : mm</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 작은 부품 실린더</p>	<p>작은부품 시험 방법 신설</p>
<p>7. 검사방법</p> <p>7.1 검사로트의 구성</p> <p>검사로트는 크레용과 크레파스로 구별하고 색상별(색명)로 구성한다. 이때 색명은 표 1에 제시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주요색(하양, 검정, 빨강, 갈색,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자주, 황토색, 남색, 풀색, 군청, 심홍) 및 금속색(금색, 은색, 크롬)의 18색상을 기본색상으로 로트를 구성하여 검사하고, 검사결과 불합격되는 색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색상에 대하여 검사한다.</p> <p>7.2~7.3 (생략)</p>	<p>7. 검사방법</p> <p>7.1 검사로트의 구성 (현행과 같음)</p> <p>7.2~7.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8. 표시 사항 8.1 ~ 8.2 (생략)	8. 표시 사항 8.1 ~ 8.2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8.3 경고(향기나 크레파스에 한한다.)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질식에 대한 경고 표시 신설</p>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 214호 (2006. 5. 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에 규정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이하 “검사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각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사 부속서 01 내지 안전검사 부속서 39를 적용한다. 다만,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산품별 안전검사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검사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검사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 안전검사 부속서 01 등산용 로프
- 안전검사 부속서 02 가속눈썹
- 안전검사 부속서 03 스포츠용 구명복
- 안전검사 부속서 04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 안전검사 부속서 05 건전지(단추형 제외)
- 안전검사 부속서 06 저독성 페인트
- 안전검사 부속서 07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 안전검사 부속서 08 부동산(방식제류 포함)
- 안전검사 부속서 09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안전검사 부속서 10 자동차용 안전유리
- 안전검사 부속서 1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래드 고무 포함)
- 안전검사 부속서 12 가정용 압력냄비·가정용 압력솥
- 안전검사 부속서 13 휴대용 사다리
- 안전검사 부속서 14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 안전검사 부속서 15 유모차
- 안전검사 부속서 16 보행기
- 안전검사 부속서 17 유아용 침대
- 안전검사 부속서 18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안전검사 부속서 19 키보드
- 안전검사 부속서 20 완구
- 안전검사 부속서 21 젖병·젖꼭지
- 안전검사 부속서 22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 안전검사 부속서 23 물놀이기구
- 안전검사 부속서 24 승차용 안전모
- 안전검사 부속서 25 운동용 안전모
- 안전검사 부속서 26 비비탄총
- 안전검사 부속서 27 이륜자전거
- 안전검사 부속서 28 헬스기구
- 안전검사 부속서 29 가스라이터
- 안전검사 부속서 30 보온용기
- 안전검사 부속서 31 어린이 놀이기구
- 안전검사 부속서 32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 안전검사 부속서 33 미끄럼방지 타일
- 안전검사 부속서 34 유아용 의자
- 안전검사 부속서 35 쇼핑카트
- 안전검사 부속서 36 크레용·크레파스
- 안전검사 부속서 37 바퀴운동화



안전검사 부속서 38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검사 부속서 39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부 칙 (제2002-1675호, 2002. 12. 1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전검사 부속서 25 비비탄총 안전검사기준은 200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나, 7.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검사 부속서 26 이륜 자전거 안전검사기준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81호, 2004. 3. 2)

이 고시는 200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564호, 2004. 9. 6)

이 고시는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5-153호, 2005. 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5-531호, 2005. 9.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5-813호, 2005. 12. 2)

이 고시는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5-1166호, 2005.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813호 (2005. 12. 2)에 의한 사항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214호, 2006. 5.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